

2025년 경제부문 경상조사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

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에서는 경제부문 경상조사 결원대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5. 6. 30.

동북지방통계청장

1. 채용인원 및 계약기간

| 지역 | 모집구분 | 모집인원 | 계약방법 | 계약기간 | 수당 (1일 기준) | 비고 |
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|
| 대구 | 기간제근로자 (통계조사원) | 1명 | 근로계약 | 2025.7.10.~ 2025.9.30. | 73,170원 | |

※ 계약기간 및 채용일정 등은 업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2. 담당업무

| 담당업무 | 주요담당업무 |
|--------|---|
| 경제통계부문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현장조사 지원, 조사자료 입력 및 내용검토 등 제반업무 수행업종별 매출액 등 월별 생산실적 조사 및 산업분류 확인 등 내용검토, 표본 사업체 생멸 확인 등사업체 대체 및 착오조사에 따른 상시 연간보정 업무 등 수행 |

3. 근로조건 및 보수

- 근무시간 및 형태: 주 5일제(40시간), 1일 8시간(9시~18시) 근무
- 보수: 일급 73,170원 및 기타 법정수당(연장, 야간, 휴일근로수당)

4. 선발방법

□ 1차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□ 2차 면접전형(1차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실시)

- 통계분야에 대한 지식, 의욕적인 자세 등 종합적으로 평가

□ 최종합격자 선정 기준

- 2차 면접점수가 높은 자
- 2차 면접점수가 동점일 경우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 결정
- 모든 조건이 동일할 경우 채용권자가 업무적격자 결정

□ 국가유공자 등(취업지원 대상자) 가점

- 1차, 2차 전형에 각각 적용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및 제31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및 제35조, 「5·18민주화운동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가점 부여

| | |
|------------|---|
| 5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- 애국지사의 가족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,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.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배우자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|
| 10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무공수훈자, 보국수훈자, 재일학도의용군인, 4.19혁명부상자, 4.19혁명공로자,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의 배우자 -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,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-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,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-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.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 - 5·18민주화운동 부상자 및 그 밖의 5·18민주화운동 희생자 - 5·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|

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, 제24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따라 가점 부여

| | |
|------------|--|
| 5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배우자 - 특수임무부상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증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중 배우자 -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|
| 10점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-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 -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|

5. 응시 자격요건(모두 충족)

- 책임감이 투철하고 계약 기간 중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자
- 지방청에서 지정한 장소에 출퇴근 가능한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 우대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 우대
 - ※ 저소득층의 범위: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 제2조제2호·제10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, 『한부모가족지원법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이상인자
 - ※ 다자녀보육가구: 20세미만의 자녀를 2명이상 보육하는 가구
 - ※ 북한이탈주민: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
- 「통계청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」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(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), 기타 관련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최근 3년간 통계청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자
- 최근 2년간 통계청 계약기간 중 중도포기 이력이 없는 자
- 채용서류 미비나 거짓 작성하지 않은 자
- 기타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라도 채용이력 등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거나 기타 법령에 저촉된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

6. 전형일정

- 지원서 접수: 2025. 6. 30.(월) ~ 7. 7.(월) 18시까지
-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: 2025. 7. 8.(화) 17:00 이후
- 면접일시 : 2025. 7. 9.(수) 10:00~ 썬빛관 3층 회의실 예정
- 최종합격자 발표 : 2025. 7. 9.(수) 17:00 이후
 - 동북지방통계청 홈페이지(<http://kostat.go.kr/ardb>)

7.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5. 6. 30.(월) ~ 2025. 7. 7.(월) 18시까지
- 접수처

| 기관명 | 담당자 | 주소 | 전화번호 이메일 |
|------------------|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동북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 | 김혜빈 | 대구광역시 북구 동암로 64 동북지방통계청 섬빛관 3층 경제조사과 | 053) 609 - 6636 akhb1788@korea.kr |

※ 업무 관련 문의 : 김혜빈 주무관 (053-609-6636)

- 접수방법
 - 이메일 : akhb1788@korea.kr (마감일 18:00 이전 발신분에 한함)
 - 우 편 : 마감일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함
 - 방문접수 : 평일 09:00~18:00(토, 일, 공휴일 제외)
 - 접수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에 반영되지 않음

8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개인정보수집·이용동의서 각 1부(필수제출, 붙임서식 참조)
-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(필수제출, 이중취업 확인용)

<해당자 추가 제출서류>

- 자격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저소득층 및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-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 이용 시)
 - ※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포털에서 확인 가능한 서류(장애인증명서,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기술자격증,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) 제외

☞ 응시원서 접수 기간내 관련 증명서류 미제출시 인정하지 않음

※ 모든 서류는 접수기간 내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

※ 응시자가 제출한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80일이며, 반환 청구시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반환(단, 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)

9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에 거짓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한 경우 향후 2년간 채용을 제한함
- 겸업 및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-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채용관련 심의기구의 심의·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
-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예정자는 부정합격 시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채용 확인서 제출
-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 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
-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,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심사위원회에 일절 제공되지 않음
-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(휴대전화, 이메일 등),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심사위원회에 제공됨
-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(미지참 시 응시 불가)
-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

【붙임1】

통계청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

| | 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|
| 업무명 | 2025년 경제부문 경상조사 | 분 야 | 기간제근로자 | 응시번호 | 미기재 |
| 성 명 (한글) | | | 성 별 | | |
| | | | 생년월일 | | |
| 연락처 | 핸드폰번호 | () - | | | |
| | 주 소 | (도로명주소) (지번주소) | | | |
| | e-mail | | | | |
| 일 반 경력사항 | 기 간 | 근 무 처 | 담당업무 내용 | | |
| | ~ | | | | |
| | ~ | | | | |
| 통계청 경력사항 | 기 간 | 근 무 처 | 담당업무 내용 | | |
| | ~ | | | | |
| | ~ | | | | |
| 자 격 사 항 | 구분 | 자격증명 | 등록번호 | 취득일자 | 시행처 |
| | 전산 관련 | | | | |
| | 기타 | | | | |
| 기 타 | 저소득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자녀보육 가구 <input type="checkbox"/> 북한이탈주민 <input type="checkbox"/> | | | | |
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합니다 | | | | | |
|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 | | | | | |
| 2025년 월 일 | | | | | |
| 성 명 : (서명) | | | | | |

주 1」 거짓으로 작성 시 채용 취소 및 향후 2년간 채용 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2」 신원조사 결과 또는 사후 확인 등으로 채용결격사유(부적격자)에 해당될 경우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

붙 임 : 관련 증명서류(저소득층 및 장애인 증빙서류, 국가유공자 증빙서류, 북한이탈주민 증빙서류, 자격증 등)

【붙임2】

통계청 기간제근로자 자기소개서

| | | | 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|-----|
| 업무명 | 2025년 경제부문 경상조사 | 분야 | 기간제근로자 | 응시번호 | 미기재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|-----|

(유의사항) 작성 시 학교명, 출생지,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·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문구는 기재하지 않습니다.

(과거 경력관련 내용 등)

- 일반 경력 및 통계조사 경력 등을 자유롭게 작성

(지원동기 및 포부 등)

- 지원동기 및 포부, 통계조사관련 표창 및 체험수기 제출 내역 등을 자유롭게 작성

【붙임5】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(해당자만 제출)

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
| 접수번호 | 접수일자 | |
| 청구인 | 성명 | 수험번호 |
| 주소 | | |
| 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 | | |
| 반환청구서류 | | |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○ ○ ○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에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